
2024년 규제혁신 추진계획

2024. 3.



문화체육관광부

[목 차]

I. 검토 배경 및 추진 경과	1
II. 5대 기본방향 및 20대 추진과제	2
III. 세부 추진계획	3
1.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	3
2. 수출 및 투자 창출	6
3. 소상공인 및 기업 애로 해소	8
4.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	11
5. 생활밀착형 규제혁신	13
IV. 향후 계획	16
[붙임 1] '23년 규제개선 주요실적	17
[붙임 2] 세부과제별 담당자 목록	19

I. 검토 배경 및 추진 경과

※ 민간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현되는 문화예술·스포츠·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**신속·과감한 규제혁신**이 긴급요

1 검토 배경

- **(성과)** '23년 문체부는 예술활동증명제도 개선,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, 체육시설 면적제한 완화, 전통사찰 내 미허가·미신고 건축물 양성화 등 규제 개선과 지방 이양* 등을 지속 추진
* 예: 대중형골프장 및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권한, 스키장업 등 등록권한
- **(한계)** 그러나 여전히 국민과 업계에 부담을 주는 공급자 중심의 규제가 있으며,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여 문화균형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필요

2 추진 경과

- **(현장소통)** '23.10월~'24.2월 150여회 이상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 중심적 규제혁신과제 발굴
 - 문화·예술·만화·게임·영화·체육·관광업계 등 분야별 장관 주제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생생하고 절실한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
 - 부산, 강릉, 신안, 진주 등 현장방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의 애로사항 청취 및 소통 강화
- **(추진체계)** 속도감 있고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해 「문체부 개혁 TF」를 통해 '24년 규제혁신 핵심과제 선정 및 추진계획 수립
 - 1차관을 TF장으로 하여, 기획조정실장(간사) 및 관련 실·국 과장·사무관·주무관 등으로 구성('24.1.31~)하여 격주간 회의 개최
 - 수요자 중심, 전방위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5대 기본방향 및 20대 추진과제 선정

II. 5대 기본방향 및 20대 추진과제

비 전

자유롭고 창의적인 **글로벌 문화강국**

기본 방향

추진과제

① 신산업 분야
규제혁신

- ① 웹툰·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
- ②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
- ③ 게임물 및 OTT 광고 등급분류 민간 자율성 확대
- ④ 이동형 가상현실(VR) 체험서비스 제도화

② 수출 및 투자
창출

- ① 카지노업 신규 영업종류 시범운영 허용
- ② 미술품 해외수출 규제 완화
- ③ 콘텐츠산업 세제 및 자금조달 제도 개선

③ 소상공인 및
기업 애로
해소

- ①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면제제도 개선
- ② 골프장 규제 개선
- ③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
- ④ 영화관 광고 상영등급분류 의무 완화
- ⑤ 호텔업 등급평가제도 개선

④ 지역 문화관광
활성화

- ① 공립 박물관·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개선
- ②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
- ③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도서정가제 완화
- ④ 문화지구 권장업종 범위 확대

⑤ 생활 밀착형
규제혁신

- ①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기간 축소
- ② 저작권 등록 수수료 국민부담 완화
- ③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개선
- ④ 국민생활 속 불편 해소

III. 세부 추진계획

1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

① **핵심** 웹툰·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

- (기존) 모든 간행물(웹툰·웹소설 포함)에 정가를 표시하고, 판매자는 정가대로 판매하되, 정가의 15% 이내에서 할인 가능
 - (개선) 웹툰·웹소설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여 웹콘텐츠 특성에 맞는 자유로운 가격 정책·마케팅 허용
- ※ 웹툰·웹소설은 생산 및 유통구조가 달라 별도 방안 마련에 관한 도서정가제 민관 협의체 합의('23.5월),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결정('23.10월)



- (기대효과) 웹툰·웹소설 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대

[추진일정]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개정안 국회 제출(~'24.6월), 개정(~'24.12월)

*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개정안 의원 발의('24.2.2. 김승수 의원 대표 발의)

② **핵심**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

- (기존) 현행 관광진흥법령상 도시지역 주택에서 외국인 대상으로만 민박업(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) 운영 가능
- (개선) 기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내국인 대상으로 확대하여 주거 중인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
- (기대효과) 제도화를 통한 도시민박업 이용자 보호

[추진일정]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방안 마련(~'24.12월)

③ 게임물 및 OTT 광고 등급분류 민간 자율성 확대

□ **핵심** 게임물 민간등급분류 확대 및 등급분류 기준 개선

- (기존) ▲민간 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 등급분류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이 제외되어 있으며, ▲일부 게임물 연령등급이 글로벌 연령등급과 상이한 사례* 발생
- * (사례) A게임사의 B게임은 국내에서는 '청소년 이용불가'로 등급분류 되었으나, 해외는 '17세 이상'(미국), '16세 이상'(유럽), '7세 이상'(일본) 등으로 분류
- (개선) ▲민간 기관 위탁 게임물 등급분류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확대하고 ▲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
- (기대효과)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자율성 보장 및 합리적 등급분류기준 마련을 통한 게임이용자 친화적 등급분류 체계 구축

[추진일정] 「게임산업법」 개정안 국회 제출(~'24.9월), 개정(~'24.12월)

□ OTT 광고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

- (기존) 자체등급분류사업자(넷플릭스·왓챠 등 10개)는 온라인비디오물(OTT)의 광고·선전물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 필요*
- *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OTT 본편을 영등위 사전등급분류 없이 자체등급분류 하더라도, 예고편 등 광고·선전물의 영등위 심의로 인해 OTT 콘텐츠의 즉각적인 홍보·유통 어려움
- (개선)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한 OTT 광고·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
- (기대효과)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OTT 본편부터 예고편 등 광고·선전물 까지 모두 자체등급분류할 수 있도록 하여 OTT 공급과정 효율화

[추진일정] 「영화비디오법」 개정(~'24.12월)

④ 이동형 가상현실(VR) 체험서비스 제도화

- (기존) 신산업인 이동형 가상현실(VR) 체험서비스* 관련 규정이 없어, 영업 등록 및 운영 불가능 (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)

* 버스나 트럭 등을 개조하여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서비스

- ▲(게임산업법)현행 법령상 게임제공업은 고정된 장소를 전제로 하고 있어 '이동형 VR 체험 서비스업'을 지자체에 등록할 수 있는 규정 부재
- ▲(관광진흥법)'이동형 가상현실(VR)' 유기기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, 이동 시마다 관광진흥법상 안전성 검사 필요



이동형 VR 버스 내부 모습



이동형 VR 버스 시연 장면

- (개선) 이동형 VR 서비스업 제도화를 위한 규정체계 마련
 - ▲(게임산업법)이동형 VR 서비스사업자가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에 청소년 게임제공업(이동형)으로 등록 후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
 - ▲(관광진흥법)이동형 VR 게임물이면서 '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' 유기기구에 한하여 분기별 정기확인검사로 매 이동 시 안전성 검사(확인검사) 대체
- (기대효과) 이동형VR 사업자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및 지역관광·교육·체험 등과 연계한 VR 콘텐츠 활성화

[추진일정] 「게임산업법 시행규칙」 및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개정(~'24.12월)

① **핵심** 카지노업 신규 영업종류 시범운영 허용

- (기존) 카지노업의 영업(게임)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게임(18개)으로만 제한되어, 새롭게 개발된 게임의 검증과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*
 - * 국내 카지노업 영업종류는 '05년 이후 추가 도입 부재
 - ** 신규 개발된 카지노게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'국내 카지노에서의 운영 데이터' 등이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 부재로 신규게임의 시범운영이 어려운 상황
- (개선) 신규 개발된 카지노게임의 사행성 및 수학적 확률의 적정성 등 검증을 위해 시범운영(6개월 이내)을 허용하는 규정 신설
- (기대효과) 신규게임 수출 기반 마련 및 카지노 게임콘텐츠 다양화를 통한 국내 카지노업 경쟁력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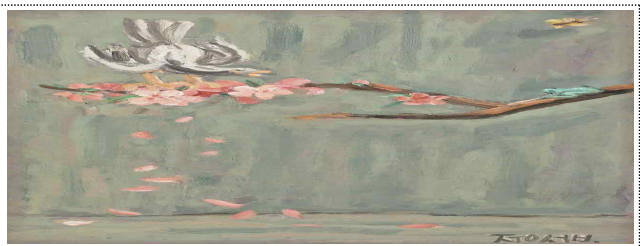
[추진일정] 「관광진흥법」 시행규칙 개정(~'24.9월)

② **미술품 해외수출 규제 완화**

- (기존) 제작된 지 50년 이상이 지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 반출* 금지 (생존 제작자 작품 예외)
 - *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 금지, 전시목적의 경우에 한해 문화재청 허가 후 반출수출 가능
- (개선) 1946년*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 가능 하도록 규제 완화 * 1945년 광복 연도
- (기대효과) 미술품 해외수출 확대를 통해 한국미술 세계화에 기여



곽인식, 62-602(1962년)
* 반출불가 결정('23년)



이중섭, 꽃나무 가지에 앉은 새(1950년대)
* 반출불가 결정('20년)

[추진일정] 「문화유산법 시행령」 개정(~'24.12월)

③ 콘텐츠산업 세제 및 자금조달 제도 개선

□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 개선

- (기존) 방송·영화·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5~30%를 소득세·법인세에서 한시적으로 공제(~25.12.31)
- (개선) ▲현 일몰규정(~25.12.31.) 폐지 또는 연장, ▲세액공제 확대 (광고·홍보비, 배우출연료* 등)
 - * (현행) 광고·홍보비용 공제 제외, 주요배우 5인 출연료의 합에서 제작비의 30%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 제외
- (기대효과) 안정적인 세제지원으로 제작현장의 부담 완화 및 신규투자 활성화를 통한 K-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기여

[추진일정] 조세지출건에서 세제당국 제출(24.4월)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 협의(24.5월~)

□ 문화산업 완성보증 확대 개편

- (기존) 선판매계약을 체결한 콘텐츠의 제작 단계에 한하여 보증 공급, 콘텐츠의 제작(완성)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
- (개선) 제작 단계 외 기획·개발 및 유통 등 콘텐츠 제작·유통 전 (全) 단계에 보증 공급이 가능하도록 완성보증 제도 확대 개편
 - (가치평가 보증) 재무제표 위주 금융심사를 넘어, 콘텐츠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기획·개발 및 유통 등 전 단계에 보증공급
 - (수출보증) 콘텐츠 수출 이행보증 및 서비스종합보험(대금미회수 리스크 담보) 등 해외 진출 단계 특화보증 제공

<보증 제도 비교>

보증계정	단계	기획 단계 (기획/개발)	제작 단계 (착수~완료 전)	사업화 단계 (완성~국내 유통)	성숙 단계 (해외진출~)
완성보증 계정		미지원 영역	완성보증 상품	미지원 영역	미지원 영역
콘텐츠보증 계정(안)			완성보증 상품		수출보증 상품
가치평가 보증 상품					

- (기대효과) 영세한 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강화 및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산업 성장

[추진일정]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개정안 발의(~24.6월)

① **핵심**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면제제도 개선

- (기존) 청소년 관람불가 콘텐츠 또는 청소년 유해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키는 경우* 등에 영업자에게 행정처분 부과 가능(영업정지, 등록취소 등)
 - * ▲영화비디오법(청소년 관람불가 영화·비디오,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청소년 출입시간), ▲게임산업법(청소년 이용불가 게임, PC방 청소년 출입시간), ▲음악산업법(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시간, 청소년실 제한 등) ▲공연법(청소년 유해공연물)
- ①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·변조·도용한 경우 등에도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규정 부재(영화비디오법, 게임산업법, 공연법)
- ②행정처분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(음악산업법)*에도 면제요건이 불충치·불기소·선고유예 등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는 경우로 한정
- (개선) ①신분증 위조·변조·도용 등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근거 신설(영화비디오법, 게임산업법, 공연법)
 - ②CCTV, 진술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면제요건 확대(음악산업법 시행규칙)
 - ③영업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 및 불응시 대응근거 신설(영화비디오법, 게임산업법, 공연법, 음악산업법)
- (기대효과) 선량한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 마련

[추진일정] 「영화비디오법」, 「게임산업법」, 「공연법」, 「음악산업법」 개정(~'24.12월), 「음악산업법 시행규칙」 개정(~'24.6월)

② 골프장 규제 개선

□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방식 개선

- (기존) 비회원제 골프장*의 이용방식이 '예약순서'로 한정되어, 일정 이용시간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 골프장 패키지 상품 판매, 단체팀 이용 및 골프대회 개최 등이 제약

* 비회원제 골프장: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골프장업

- (개선) 이용 우선 원칙(예약 순서)의 예외* 판매 허용

* 골프장과 숙박 등 연계, 일정 인원수 이상 단체의 정기적 이용, 공익 목적 대회 유치 등

- (기대효과) 골프장 경영 자율성 제고 및 다양한 상품을 통한 이용자 편의 제고

[추진일정] 「체육시설법 시행령」 개정(~'24.9월)

□ 골프장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폐지

- (기존) 골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육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체육지도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

* 18홀 이상 36홀 이하 골프 코스: 1명 이상, 36홀 초과 골프 코스: 2명 이상

- (개선) 골프장업자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폐지

* 골프장 내 운영 중인 골프연습장업의 경우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유지

- (기대효과) 골프장업자의 부담 경감 및 경영 자율성 제고

[추진일정] 「체육시설법 시행규칙」 개정(~'24.8월)

③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

- (기존) 게임사업자는 게임물 내용 수정 시, 24시간 내에 신고하여야 하며, 등급분류와 무관한 경미한 내용 수정 사항도 신고 필요

- (개선) 내용수정신고를 사전에도 할 수 있게 하고, 내용 수정이 기존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는 신고 의무면제

- (기대효과) 신고의무 완화로 사업자 부담 및 행정력 낭비 최소화

[추진일정] 「게임산업법」 개정(~'24.12월)

④ 영화관 광고 상영등급분류 의무 완화

- (기존)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광고는 방송광고*와 동일한 내용인 경우에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
 - * 시청자에게 제공된 바 있는 방송광고는 「방송법」에 따른 심의 기준 기준 충족
- (개선) 방송광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한 광고의 경우, 영화관에서 상영 시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예외규정 마련
- (기대효과) 중복적인 상영등급분류에 소요되던 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기대

[추진일정] 「영화비디오법」 개정(~'24.12월)

⑤ 호텔업 등급평가제도 개선

- (기존) ▲등급별 평가지표가 달라, 희망등급으로 등급결정 신청 후 해당 등급에 점수가 미달되면 등급분류 재신청*(심사비 추가 납부) 필요, ▲주관성 개입 여지가 있는 일부 지표 사용
 - * 예: 5성급으로 등급결정 신청 후 5성급 점수 미달인 경우 4성급 등급결정 재신청 (5성급 280만원, 4성급 246만원, 1~3성급 168만원 심사비 납부)
- (개선) ▲1회 평가로 등급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*, ▲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지표 조정 및 지표 객관성 제고**
 - * 평가기준 4단계(1,2,3,4,5성급) → 1단계(1~5성급 평가표 1개) 또는 2단계(1~3성급, 4~5성급 평가표 2개)로 개선
 - ** 위생·안전 지표 강화 및 지표 객관화(예: 객실 소음도 → 데시벨 기기 측정 등)
- (기대효과) 평가 객관성 및 사업자 편의성 제고

[추진일정]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및 문체부 고시(「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」) 개정(~'24.12월)

① **핵심** 공립 박물관·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개선

- (기존) 지자체 장이 공립 박물관·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미리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함
- (개선)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자체의 자율성·책임성 제고를 위해 공립 박물관·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
- (기대효과)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문화기반시설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

[추진일정]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개정안 국회 제출(~'24.7월)

②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

- (기존) 관광단지는 총면적 50만㎡ 이상 대규모일 경우에만 문체부 사전협의를 거쳐 시·도지사가 지정
 - (개선) '인구감소지역*'에 한하여 총면적 5만㎡ 이상 30만㎡ 미만 규모로 '소규모 관광단지'를 신설
- *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지역, 실제 적용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 중

구분	기존	신설
지정규모	50만㎡ 이상	5만㎡ 이상 30만㎡ 미만
지정 필수시설	3종 이상	2종(공공편의시설, 관광숙박시설) 이상
지정·승인권자	시·도지사 (지정 전 문체부 사전협의)	시장·군수 (지정 전 시·도지사 사전협의)

- (기대효과) 인구감소지역에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

[추진일정] 「관광진흥법」 개정(~'24.12월)

③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도서정가제 완화

- (기존) 모든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, 판매자는 예외 없이 정가대로 판매하되, 정가의 15% 이내에서 할인 가능
- (개선) 지역서점에 한해 15% 이상 할인 판매 허용
- (기대효과) 다양한 할인 마케팅 활용을 통한 소비자 혜택 증대 및 지역서점 이용 활성화

[추진일정]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개정안 국회 제출(~'24.6월), 개정(~'24.12월)

④ 문화지구 권장업종 범위 확대

- (기존) 문화지구* 내에서 '권장업종'(세제혜택·융자지원 대상)으로 지정될 수 있는 시설을 '문화시설'과 '전통문화 관련 영업시설'로 한정

* 지구 내 권장업종 세제혜택과 금지업종 진입제한을 통해 일정 구역 내 특색 있는 문화자원 밀집을 유도하기 위해 2000년 도입(인사동 등 6곳 지정·운영 중)



- (개선) '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관련한 영업시설'도 권장업종으로 지정하여 세제혜택 등 지원 가능 ((예) 서초음악지구·악기공방 등)
- (기대효과)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

[추진일정] 「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」 개정 및 시행(~'24.3월)

① **핵심**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기간 축소

- (기존)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문서 등을 보낸 후 1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법정허락을 통해 저작물 이용 가능
- (개선) 문서 회신 대기 기간을 최대 20일로 축소
- (기대효과) 권리자 불명 저작물 이용의 신속성·편리성 제고

[추진일정] 「저작권법 시행령」 개정(~'24.7월)

② 저작권 등록 수수료 국민부담 완화

□ 웹툰·웹소설 등 장편연재 저작물 등록 수수료 인하

- (기존) 웹툰·웹소설 등 순차적으로 공표하는 저작물(순차적 저작물)의 경우 추가 등록을 할 때마다 동일한 등록 수수료 발생
- (개선) 순차적 저작물은 최초 등록 후 두 번째 추가 등록부터 수수료 인하 (2~3만원 → 1만원)
- (기대효과) 웹툰·웹소설 저작권자 부담 완화 및 관련 업계 육성

[추진일정] 「저작권법」 시행규칙 개정(~'24.6월)

□ 사회적 약자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

- (기존)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에 한정하여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(1인당 연간 10건)
- (개선)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을 장애인, 국가유공자, 5·18 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까지 확대
- (기대효과) 사회·경제적으로 어려운 창작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

[추진일정] 「저작권법」 시행규칙 개정(~'24.6월)

③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개선

□ 여행업·국제회의업·유원시설업 등록·허가 신청 서류 부담 완화

- (기존) ▲(여행업·국제회의업)등록 시 자본금 증빙 서류*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거쳐 제출, ▲(유원시설업)허가 신청 시 허가신청서 외에 '성명·주민등록번호 기재 서류' 추가 제출

* 대차대조표(법인의 경우), 영업자산명세서(개인사업자의 경우)

- (개선) ▲(여행업·국제회의업)자본금 증빙서류를 법인등기부 등본*(회계사·세무사 확인 불필요) 제출로 간소화, ▲(유원시설업)신청양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추가 (추가서류 제출 불필요)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으로 결격사유 확인
- (기대효과) 등록·허가 등 신청인의 불필요한 행정부담 완화

[추진일정] △(여행업·국제회의업)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개정(~'24.6월)
△(유원시설업)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개정(~'24.7월)

□ 야영장업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개선

- (기존) 현행 관광진흥법령상 글램핑, 카라반과 같은 야영시설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현장 혼선 발생
- (개선) 야영장업 등록기준 명확화 및 절차 간소화
- (기대효과) 야영장 이용자의 안전·편의성 제고 및 현장 혼란 해소

[추진일정]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개정(~'24.12월)

④ 국민생활 속 불편 해소

□ 스포츠 토트 발매 마감시간 개선

- (기존) 스포츠토트 발매마감은 해당 '운동경기 시작 10분 전'
- (개선) 발매 마감시간을 해당 운동경기 '시작시간 전'으로 확대하여, 경기별 배당률 등 최신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 매력도 증진
- (기대효과) 스포츠토트 이용고객 만족도 제고 및 상품 경쟁력 향상 등을 통한 매출 확대 기여

[추진일정] 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」 개정(~'24.10월)

□ 경륜·경정 심판의 재등록 절차 완화

- (기존) 경륜·경정 심판이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심판 재등록을 할 경우, 실기시험(경주진행, 판정능력) 및 면접시험, 신체검사 합격 필요
- (개선) 6개월 이상 심판업무에 종사한 심판과 심판 자격증을 보유한 교육훈련* 이수자의 경우에는 심판업무 수행능력이 확인된바, 실기시험을 면제하고 면접과 신체검사만 보도록 개선
 - * 경륜경정 심판은 연 1회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함(경륜경정관리규정)
- (기대효과) 심판업무 종사자가 번거로운 절차 없이 재등록할 수 있도록 재등록 편의 제고

[추진일정] 「경륜·경정 관리규정」 개정(~'24.4월)

□ 박물관·미술관 준학예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확대

- (기존) 박물관·미술관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시험예정일 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필요
- (개선)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
- (기대효과) 준학예사 시험 응시자의 수험준비 부담 완화

[추진일정] 「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」 개정(~'24.6월)

IV. 향후 계획

- **(규제 발굴)** 간담회·연구용역 등을 통한 신규 규제과제 발굴 노력 지속
 - 국민·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 도출을 위해 현장간담회 등을 통한 건의과제 적극 발굴(수시)
 - 문화·체육·관광 전 분야의 숨은 규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('24.下~)
- **(밀착 관리)** 「문체부 개혁TF」를 통해 발굴된 과제의 차질없는 신속이행을 위한 규제과제별 밀착 관리
 - 민간기업, 지자체 등 건의과제를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제신문고·외부기관 건의과제에 대한 조정회의 등 밀착 관리 추진(수시)
 - 분기별로 규제 최종 개선 여부 및 규제혁신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이행현황 점검(매분기)
- **(홍보 강화)** 국민께서 규제혁신의 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성과 홍보 강화
 - 정책 발표·입법예고·국회제출·국회의결·국무회의 상정 및 공포 등 규제개선 추진 단계별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추진
 - 핵심과제는 카드뉴스, 인포그래픽,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매체로 규제개선 스토리 전방위적 홍보(문체부 SNS 채널 활용)
 - 분기별 개선완료 과제는 카드뉴스로 종합제작·홍보
- **(인센티브 강화)** 규제혁신 우수부서·공무원 선정 및 포상(연 1회)
 - 규제혁신 유공 포상 규모 확대('23년 1명→'24년 4명), 인사상 인센티브(승진가점 등) 추가

- **K콘텐츠 투자 활성화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했습니다**
 - **(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)** 방송, 영화, OTT콘텐츠 등의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(「조세특례제한법」 '24.1.1. 시행, 기재부 협조)
* (기본공제) 대 5%/중견 10%/중소 15% + (추가공제) 대·중견 10%/중소 15%
 - **(모태펀드의 문화콘텐츠 프로젝트 투자제한 완화)** 모태펀드 출자를 받은 자(子)펀드는 대기업 수익 비중이 (기존)30% 미만에서 (개선)40% 미만인 경우까지 투자 가능하도록 투자제한 완화(「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」 '23.4.13. 시행, 중기부 협조)
 - **(AI 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)** AI 관련 저작권·소유권 인정여부 및 인정기준 등 마련('23.12.27.)하여 산업계 불명확성 해소
 - **(외래관광객 편의 증진)** 68개국 대상 전자여행허가제 한시 면제(~'24.12), 동남아 단체전자비자 발급대상 확대*(23.6) 및 비자 수수료 면제**(~'24.12)
* 베트남·필리핀·인도네시아 3인 이상 단체 대상 / ** 중국·베트남·필리핀·인도네시아 대상

- **소상공인과 기업에 부담이 되는 민생규제를 개선했습니다**
 - **(체육시설업 면적제한 완화)** 자동차경주장업·실외 골프연습장업·썰매장업 부지면적 제한 삭제(「체육시설법 시행령」 '23.12.29. 시행)
 - **(관광사업자 재창업·휴업 규제 완화)** ▲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으로 사업등록 취소된 경우 기존 2년의 결격기간 삭제, ▲ 1개월 미만단기 휴업신고 의무 면제(「관광진흥법」 '23.7.27. 국회제출, '24.2.1. 국회통과)
 - **(휴양업종 개별시설 등록기준 완화)** 전문휴양시설(식물원, 수족관, 온천장 등)의 등록기준을 개별법에서 정하는 기준만 남기고 관광진흥법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던 기준은 삭제(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'23.3.28. 시행)
 - **(카지노업 무인 전자테이블 게임 허용)** 딜러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전자테이블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(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'23.8.23. 시행)

□ **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규제는 작은 규제도 꼼꼼히 살폈습니다**

- **(전통사찰 내 미허가·미신고 건축물 양성화)** 전통사찰 내 미허가·미신고 건축물을 사용승인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 신설, 사용승인 시 완화된 심의기준 적용(「전통사찰법」 '24.2.13. 개정, '25.2.14. 시행)
- **(공공도서관 편의시설 설치 특례)** 공공도서관에 휴게음식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 신설(「도서관법 시행령」 '23.9.12. 시행)
- **(예술활동증명제도 개선)** ·처리기관 확대(1곳→문체부가 고시하는 지역문화재단), ·절차 간소화(20년 이상 활동 예술인 재신청 면제 등) (「예술인 복지법 시행령」 '23.9.22. 시행 및 시행규칙 '23.6.30. 시행)
- **(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)** 도서·공연비('18.7월~), 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('19.7월~), 신문 구독료('21.1월)에 이어,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('23.7월~) 추가(「조세특례제한법」 '23.7.1. 시행)
* (적용대상)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% 이상인 사람에 대해 '23.7.1. 사용분부터 적용
- **(저작권 등록 수수료 부담 완화)** ·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저작권 등록부 열람·사본 발급 시 수수료 면제('23.9.14. 시행), ·10건 초과 저작재산권 권리변동 등록 수수료 할인기준 완화('23.12.27. 시행)

□ **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혁파했습니다**

- **(일본 비디오물 등급분류 개선)** '영화'로 우회적 등급분류 받아왔던 일본 비디오물을 '비디오물'로 등급분류 받을 수 있도록 개선('23.7.12.)
* 그동안 일본 비디오물(예능·드라마 등) '비디오물'로 등급분류 받을 수 없어 심야시간 편법 상영 등을 통해 '영화'로 우회적으로 등급분류 후 국내 유통
- **(외국공연물 추천제한 기준 정비)**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제한기준 중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는 기준* 삭제(「공연법 시행령」 '23.5.4. 시행)
*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 동작을 묘사하는 것
- **(뉴스통신사업 등록요건 완화)** 기술 발전으로 불필요해진 요건* 삭제(「뉴스통신법 시행령」 '23.4.18. 시행)
* '인터넷 전용회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' 외 나머지 요건 삭제

붙임 2

세부과제별 담당자 목록

추진과제	소관부서	담당자(연락처)
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		
① 웹툰·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	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	안승연 사무관 (044-203-3244)
②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	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	이나은 사무관 (044-203-2863)
③ 게임물 및 OTT 광고 등급분류 민간 자율성 확대	-	-
1) 게임물 민간등급분류 확대 및 등급분류 기준 개선	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	장동엽 사무관 (044-203-2442)
2) OTT 광고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	콘텐츠정책국 영상콘텐츠산업과	김하정 사무관 (044-203-2436)
④ 이동형 가상현실(VR) 체험서비스 제도화	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	이장우 사무관 (044-203-2446)
	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	나웅재 사무관 (044-203-2879)
② 수출 및 투자 창출		
① 카지노업 신규 영업종류 시범운영 허용	관광산업정책관 융합관광산업과	백현민 사무관 (044-203-2883)
② 미술품 해외수출 규제 완화	예술정책관 시각예술디자인과	최혜연 사무관 (044-203-2748)
③ 콘텐츠산업 세제 및 자금조달 제도 개선	-	-
1)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 개선	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	이명환 사무관 (044-203-3239)
2) 문화산업 완성보증 확대 개편	콘텐츠정책국 콘텐츠금융지원과	채창렬 사무관 (044-203-2582)
③ 소상공인 및 기업 애로 해소		
①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면제제도 개선	예술정책관 공연전통예술과(공연법)	김지수 사무관 (044-203-2738)
	콘텐츠정책국 영상콘텐츠산업과 (영화비디오법)	이초룡 사무관 (044-203-2432)
		김하정 사무관 (044-203-2436)
	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 (게임산업법)	장동엽 사무관 (044-203-2442)
콘텐츠정책국 대중문화산업과 (음악산업법)	최수진 사무관 (044-203-2464)	
② 골프장 규제 개선	-	-
1)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방식 개선	체육국 스포츠산업과	어강우 사무관 (044-203-3156)

추진과제	소관부서	담당자(연락처)
2) 골프장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완화	체육국 스포츠산업과	어강우 사무관 (044-203-3156)
③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	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	장동엽 사무관 (044-203-2442)
④ 영화관 광고 상영등급분류 의무 완화	콘텐츠정책국 영상콘텐츠산업과	김하정 사무관 (044-203-2436)
⑤ 호텔업 등급평가제도 개선	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	임효정 사무관 (044-203-2870)
4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		
① 공립 박물관·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개선	지역문화정책관 문화기반과	장지원 사무관 (044-203-2649)
②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	관광산업정책관 관광개발과	전충원 사무관 (044-203-2892)
③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도서정가제 완화	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	안승연 사무관 (044-203-3244)
④ 문화지구 권장업종 범위 확대	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과	지나은 사무관 (044-203-2649)
5 생활밀착형 규제혁신		
①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기간 축소	저작권국 저작권산업과	정종량 사무관 (044-203-2469)
② 저작권 등록 수수료 국민부담 완화	-	-
1) 웹툰·웹소설 등 장편연재 저작물 등록 수수료 인하	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	임종우 사무관 (044-203-2474)
2) 사회적 약자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	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	임종우 사무관 (044-203-2474)
③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개선	-	-
1) 여행업·국제회의업·유원시설업 등록·허가 신청 서류 부담 완화	관광정책국 관광기반과(여행업)	추연봉 사무관 (044-203-2842)
	관광산업정책관 융합관광산업과 (국제회의업)	봉소희 사무관 (044-203-2879)
	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 (유원시설업)	나웅재 사무관 (044-203-2866)
2) 야영장업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개선	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	정현자 사무관 (044-203-2867)
④ 국민생활 속 불편 해소		
1) 스포츠 토토 발매 마감시간 개선	체육국 체육정책과	이수진 사무관 (044-203-3119)
2) 경륜·경정 심판의 재등록 절차 완화	체육국 체육정책과	이수진 사무관 (044-203-3119)
3) 박물관·미술관 준학예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확대	지역문화정책관 문화기반과	장지원 사무관 (044-203-2649)